

# CISG하에서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 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for  
the Goods under CISG

심중석(Chong-Seok Shim)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교수

## 목 차

I. 서론	V. 요약 및 결론
II. 매수인의 의무와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조치	참고문헌
III. 대금불확정계약과 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정	Abstract
IV. 대금지급의 장소와 시기	

## 국문초록

본고의 연구범위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3편 제3장 제1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로서 개별조항의 법적 기준에 관한 요지와 그 시사점 내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제53조는 본질의 개요임과 동시에 매수인의 주된 의무를 일괄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본조는 CISG가 물품매매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제30조와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 제54조는 계약이나 또는 적용법규에 따라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준비조치를 다루고 있는 규정으로서 본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제61조에 따라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제71조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준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5조는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의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원칙 내지 국제사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6조는 당사자가 물품중량의 기준을 합의해 두고 있지 않다면 포장중량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으로 물품대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당사자 의사나 관행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제57조에 의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물품대금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당사자가 물품의 인도 또는 서류의 교부 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되는 장소에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영업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추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는 그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이 경우 본조는 제78조에 언급된 이자의 누적의 시기의 기산시점이 된다. 제59조에 따라 매수인은 그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모든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해 시점 이후로 연체된 금액의 이자가 적용된다.

**주제어**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매수인 의무, 대금지급, 순중량, 대금지급장소, 대금지급시기

## I. 서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은 기본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국제상거래에서의 법률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서의 지위를 점한다. 본고 제출시점 기준으로 CISG의 가입국은 총 79개국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한 CISG가 가장 성공한 선도적 입법례로서의 지위를 담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CISG는 제1조상의 국제성 충족을 요건으로 ‘매매계약의 성립’(제2편)과 당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제3편)만을 규율하고 있는데(제4조), 본고는 이 중에서 제3편 제3장 매수인의 의무 가운데 제1절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53조~제59조)을 연구범위로 두고 이들 조문에 관한 법적 기준과 효과 및 그 적용사례로부터의 법적 유의점과 시사점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본고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 의무를 중심으로 그 법적 기준과 효과 및 당해 규정이 적용된 판결례의 검토 및 평가를 통해 국제상거래에 임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예견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말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범위에 기한 대상조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53조에서는 매수인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로서 물품대금의 지급에 관한 총칙규정을 다루고 있고 이를 위한 조치(제54조) 및 대금지급의 방법(제55조~제56조), 장소(제57조), 시기(제58조)와 대금지급의 불요성(제59조) 등의 개별규정을 추보하여 그 구성체계를 이루고 있다.

본래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공통의 적용법규로서 그 순기능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이들 규정이 적용되어 물품대금의 지급의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CISG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유달리 파생적인 법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물품대금의 결정방식과 관련한 양립하는 판결주문, 계약국의 국내법과 CISG와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준거법과 재판관할의 결정, EU 역내법과의 충돌 등의 양상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본고는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하여 대상조문에 관한 명료한 법적 기준을 추론하고 이에 개별조문이 적용된 판결례를 결부하여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의무의 확정이라는 시각에 주안점을 두고 본고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특별히 현재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는 CISG와 신유럽규범(EuGVVO)과의 충돌은 국제기업으로서 그 영업소를 EU 역내에 두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본 대상조문에 관한 이해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고의 논제에 기하여 그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하강현(2010)은 제57조를 중

심으로 물품대금지급 장소에 관한 법적 기준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면서 이에 판결례를 결부하여 법적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고, 허해관(2010)은 매수인의 의무를 대금지급의무와 물품 수령의무로 구분하여 CISG상의 법리적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다른 한편 김용일 외(2010)는 대금지급에 관한 이행지체의 법리를 통해 당해 매도인의 구제권에 관한 법률효과를 명정하고 있고, 오석웅(2008)은 CISG하에서의 매수인의 의무를 대별하고 비교법적 분석도구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과의 비교를 통해 실무상의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고의 논제에 기하여 심종석(2012)은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통해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 의무에 관한 규정해석의 전반을 매도인의 시각에서 우회적으로 접근하여 이에 상당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도 있다.<sup>1)</sup>

본고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병합하여 본고의 배경에 두고 CISG하에서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료히 해제함과 동시에 개별조문이 적용된 판결례를 이에 유효 적절히 결부하여 국제상사계약에 입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일말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법적 안정성 제고의 시각에서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의무에 관한 당해 규정의 해석상 유의점과 예견가능성 제고의 시각에서 개별 판결례로부터 고려하여야 할 시사점 제시 등이다. 이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부각할 수 있는 본고의 차별적 특징으로서, 곧 본고는 당해 개별조문의 법적 기준에 기한 해석상의 문제와 법적용상의 문제와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음을 함의한다.

## II. 매수인의 의무와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조치

### 1. 서언

CISG 제3편 제3장 제1절(대금의 지급)은 7개 조항을 포함한다. 우선 제53조에서는 매수인의 기본의무인 대금지급의 의무를 다루고 있다.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제1절의

1) 허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무역학회지』, 제35권 1호, 한국무역학회, 2010, pp.361-386., 하강현, “국제물품매매에서 대금지급장소조항의 적용사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4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pp.105-130., 김용일 외,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이행지체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 pp.385-404., 심종석, “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pp.231-251., 오석웅,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과 UNIDROIT 원칙 2004의 비교연구”, 『법학연구』, 제25권, 한국법학회, pp.269-296.

2개 조항(제53조~제54조)은 특별한 경우의 물품대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5조는 계약에 가격이 규정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규정이다. 제56조는 물품의 중량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가격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1절 그 밖의 4개 조항들은 대금의 지급방식에 관한 규정이다. 그 내용은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위해 준비조치를 취하는 의무와 요구되는 절차에 따르는 의무에 관한 제54조, 지급장소와 그 시기에 관한 제57조 내지 제58조 그리고 매도인의 정식적인 대금지급요청의 면제에 관한 제59조 등이다.

일반사항으로서 본절의 각 조항은 매도인의 의무(제2장)로서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제1절, 제31조~제34조)와 대칭되어 편제된 특징이 있다. 곧 제31조와 제33조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와 서류교부 의무의 이행장소와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절의 제56조와 제58조에는 ‘매수인이 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장소와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제55조에서와 같이 본조는 물품매매계약을 위한 청약의 구성[제14조 (1)]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57조는 계약해제와 관련되는 각 조항, 특히 계약해제를 선언한 이후의 물품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81조 (2)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특히 본절의 일부 조항들은 CISG의 적용범위 이외의 사항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지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조치를 취해야 하는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54조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담보’(security), ‘은행보증’(bank guarantee), ‘환어음’(bill of exchange) 등과 관련되어 있는 비협약적인 규칙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아울러 매수인의 대금지급장소를 다루고 있는 제57조는 관할규정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 2. 매수인 의무의 총괄

제53조는 제3장의 총괄적 개요로서 취급할 수 있는 규정으로 매수인의 주된 의무를 다루고 있다. 한편으로 CISG에서는 물품매매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본조는 제30조(매도인 의무의 총괄)와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의 주요 의무는 계약과 CISG 규정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령’하는 것이다. 본 규정과 제6조(계약에 의한 배제 또는 변경)를 병합할 경우 만약 계약상 CISG에 규정하고 있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하게 된다.

본조에 기하여 매수인은 특단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예컨대 물품대금지급의 담보를 제공하는 의무, 물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함에 있어 원료를 제공하는 의무[제3조(제조될 물품 및 서비스) (1)] 그리고 물품의 형태·크기 또는 그 밖의 특징을 제공하는 의무[제65조(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sup>2)</sup>

### 3.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

제54조는 계약이나 또는 적용법규에 따라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준비조치를 다루고 있다. 예컨대 계약에서 요구되는 준비조치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장 개설’, ‘담보증명’, ‘은행지급보증’, ‘어음의 인수’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준비조치는 반드시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본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매수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먼저 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본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반 의무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곧 매수인은 달리 합의한 바가 없을 경우 물품대금지급과 관련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제61조(매도인 구제권의 총괄)에 따라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제71조(이행정지)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준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요컨대 이러한 절차의 불이행은 그 발생이 가능한 이행기 전의 위반에 관한 일련의 저촉적(抵觸的) 요소로서 다름없이 계약위반으로 취급될 것으로 본다.<sup>3)</sup>

#### 1) 매수인 의무의 범위

매수인 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조는 매수인이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지, 매수인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마저도 부담해야 하는지, 필요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 절차를 위반하게 되는지 등의 여부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이 경우 본조의 적용상 물품대금지급을 위해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칙이 특단의 행정조치마저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업적 조치’와 ‘행정적 조치’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곧 전자는 매수인이 필요한 결과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이며, 후자는 매수인이 최고(催告)의 방법을 사용함에 따른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로부터의 실익은, 일례로 매수인의 행정당국이 외환송금을 승인하는 것을 담보하는 것보다도 매수인에게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제반 행정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것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2) Schlechtriem, Pet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 Oxford Univ. Press, 1998, pp.454-455.

3) Schwenger, Ingeborg · Fountoulakis, Christiana, *International Sales Law*, Cavendish Publishing, 2007, p.413.

## 2) 지급화폐

본조에는 지급화폐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 문제는 제6조(당사자의 의도)와 제9조(관행과 관습의 구속력)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통상 매도인 영업소의 화폐를 지급화폐로 하는 이유는 매도인의 영업소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장소(제57조)임과 동시에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제31조 (c)]이기 때문이다.

## 4. 판결례

### 1) 논점과 사실관계

본건은 물품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조기인도 및 수량초과인도의 요건을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sup>4)</sup> 계약당사자는 ‘CFR’ 조건으로 화학물을 계약의 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본건 계약에 의하면 선하증권 발급 후 90일 이내에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통해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의 내용에는 초도물품의 선적기간과 신용장이 개설기한에 관한 약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아울러 만약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매도인은 신용장 개설기간을 연장시켜 주거나 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용장 개설에 즈음하여 매수인은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장 개설을 거절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본건 선적을 연기하는 것과 신용장의 개설기한의 연장을 허여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수차례의 선적 및 신용장 개설 연기요청만을 거듭 주장함과 동시에 물품의 가격할인을 포함하여 제반 인도조건까지 그 변경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매도인은 본건 물품의 특성상 장기간 고온에 보관되면 변질될 우려가 있었기에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매수인에게 물품을 전매하였다. 아울러 매수인의 불합리한 요구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하여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곧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 같은 계약위반에 기하여 경제적 손실 및 그 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자신은 신용장 개설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다만 개설기한을 연기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계약에 의한 매도인의 기대를 실질적으로 박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중대한 계약위반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자신은 매도인이 다른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매하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매도인이 자신의 기대를 박탈하

4) 『Oberlandesgericht Köln, (Germany), 『Unknown』, 2000. [이하 판결례는 ‘UNILEX’에 현시(display)된 공식 판결례임을 참고한다. 『http://www.unilex.info』(2013.07.15)]

고 자신의 고객에게 물품을 전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매도인의 중대한 계약위반, 제3의 고객에게 물품을 전매함으로써 매수인 자신에게 끼친 손실, 제3자와 거래 시에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2) 판결요지

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매수인이 계약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매수인은 ‘CFR’ 조건에 비추어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매수인 의무의 총괄), 제54조(대금지급을 위한 조치) 및 제59조(대금지급요구와 지급요구의 불필요)에 의하면 매수인은 약정한 지급수단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본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매수인은 제25조(중대한 계약위반), 제63조(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1) 및 제64조(매도인의 계약해제권)에 의거,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하였고 이에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또한 매도인의 추가기간 지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이에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제61조(매도인 구제권의 총괄), 제74조(손해액 산정의 일반원칙), 제75조(대체거래와 손해액)에 따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금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3) 평가

본 판결의 사실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당초 매수인이 주장한 시장상황의 변동은 매도인이 선적연기와 신용장 개설을 연기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수용하기에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매수인의 물품대금 할인과 제반 인도조건까지 그 변경을 요구하였던 사실은 계약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의 항변사유는 당초 본 계약으로부터 기대하였던 매도인의 실질적 이해를 박탈하는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취급할 수 있고 나아가 매수인의 금반언(estoppel)에 의한 신의칙 위반이라고도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본건 계약의 목적물이 장기간의 보존에 취약했던 것을 매수인이 알 수 없었고 또한 모를 수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도인의 대체거래에 대한 매수인의 항변사유는 그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차례 중용하였던 신용장 개설에 관한 통지의 사실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사실로 보아 마땅하다. 따라서 매수인은 당해 시장상황의 변동이 제79조에 의한 특

단의 장애나 사정변경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제53조 및 제54조에 기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결국 법원의 판결주문으로서 제61조, 제74조, 제75조에 기하여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마땅한 판결이라고 생각되는 바, 본건은 제53조, 제54조 및 제59조가 병합되어 적용된 전형적인 판결례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본다.<sup>5)</sup>

### Ⅲ. 대금불확정계약과 순증량에 의한 대금결정

#### 1. 대금불확정계약

통상적으로 제55조를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양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함은 대부분의 법원 판결주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곧 계약당사자가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본조는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당해 계약에 개입하여 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가 상호 간에 차후의 가격에 관한 합의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 본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sup>6)</sup>

##### 1) 물품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물품이 다수의 단위물품으로서 하나의 조합물로서 계약의 목적물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주문 또는 발주서의 내용에 개별 단위물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조합물의 총가격만이 명시되어 있다면 당해 제안은 제14조(청약의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제안에서 비롯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본다.

이 경우 본조는 가격조정을 결여한 실효된 계약에 그 구체권을 허여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본조는 이에 적용될 수 없고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제14조는 가격조건을 다름없이 포함하여야 계약이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던 물품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본조를 원용할 수 있다. 곧 제14조 또는 본조를 적용하는 법적 기준에 있어 통상 본조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5) Kelong, N. William, "Problems Relating to the Place of Performance for Payment of Damages and the Admissibility of Set-Off Claims under Article 74 CISG," *Surrey Law Working Papers*, Surrey Law School Publishing, 2013, pp.6-7

6) Schwenger, Ingeborg,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3rd ed., Oxford Univ. Press, 2010, pp.815-823.

타당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본 계약을 유효하게 취급하여 누락된 물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습적 배려가 우선시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2) 물품가격의 결정

본조가 적용되는 경우 양당사자가 합의한 물품가격은 계약체결 시에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물품의 통상적인 판매가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당 물품이 원재료 또는 반제품인 경우 본조의 적용에는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완제품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당해 물품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6조(시가에 기초한 손해배상액)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의 ‘시가’(市價, current price)를 결정할 때 본조의 가격결정방법을 통하여 그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가격 또는 이에 준한 가격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유사한 계약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조는 제14조와 결부하여 그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 2. 순중량에 의한 대금의 결정

제56조는 당사자가 물품중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경우 만약 총중량(gross weight) 또는 순중량(net weight)으로 하는지를 명확히 합의해 두고 있지 않다면, 순중량으로, 즉 ‘포장중량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으로 물품대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당사자 의사나 관행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원칙이라 할 수 있다.<sup>7)</sup>

## 3. 판결례

### 1) 논점과 사실관계

본건은 물품대금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를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sup>8)</sup> 매도인(네덜란드)과 매수인(스위스)은 ‘직물’을 계약의 목적물로 구두 합의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에는 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수를

7) 新堀 聰, 『ウィーン賣買條約と貿易契約』, 同文館出版, 2009, p.98.

8) 『Bezirksgericht St. Gallen』(Switzerland), 『3PZ 97/18』, 1997.08.03. 유사한 사례로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Cour d'Appel de Grenoble, Chambre Commerciale』(France), 『213』, 1995.04.26., 『Landgericht Neubrandenburg』(Germany), 『10 O 74/04』, 2005.08.03.

놓기 위하여 제3자인 자수업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후 매수인은 전언통신(팩스)으로 매도인에게 본건 직물을 자수업자에게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자수업자에게 인도된 직물에 대한 상업송장의 발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업송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인도된 직물의 가격이 고가이므로 이를 제조정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인도된 수량이 계약서에서 합의한 수량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요청한대로 가격을 제조정한 서신을 발송하였다.

그렇지만 일정기간 후에 매수인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직물가격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유로 본건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고 이를 파기하였다. 매도인은 이에 불복하고 본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 2) 판결요지

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본건에서는 구두합의에 따라 계약서가 없으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우선 CISG에서 요구하고 있는 청약의 요건[제14조(청약의 기준)]이 갖추었는지를 검토할 때 이는 청약자로서 매수인이 승낙의 경우에 구속될 의사가 있었는지와 물품의 수량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확정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상대방과 같은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과 행위를 해석하건대[제8조(당사자의 진술 또는 그 밖의 행위의 해석)], 당초 매수인은 계약에 구속될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물품수량 또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계약체결 시에 당사자 간에 확립된 사정이나 관례가 없었다면 계약에 구속될 의사는 계약체결 이후 당사자의 행위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에 대한 상업송장을 발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매수인이 제안할 당시 계약에 구속될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데 충분하다. 마찬가지로 매수인의 행위에 비추어 매수인이 물품이 인도된 후 2개월이 지나서야 수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실제로 인도된 수량의 물품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당사자가 계약상 매매가격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으나 매수인이 수정된 상업송장에 표시한 가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그 가격은 당해 거래에 있어서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가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제55조(대금불확정계약)].

### 3) 평가

본 판결례의 논점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를 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그 어떠한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계약체결 시에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 하에서 매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징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원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물품에 대한 상업송장을 발행하도록 요구한 사실에 비추어 매수인이 제안을 할 당시 계약에 구속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매수인이 물품이 인도된 후 2개월이 지나서야 수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실제로 인도된 수량의 물품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범위를 넓게 인정한 사례로 취급할 수 있다.

## IV. 대금지급의 장소와 시기

### 1. 대금지급의 장소

제57조 (1)은 대금지급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본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물품대금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지급되어야 하고 당사자가 물품의 인도 또는 서류의 교부 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되는 당해 장소에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한편 계약체결 후에 매도인의 영업소가 변경될 수 있다.

본조 (1)의 (a)에 의하면 매도인의 영업소는 대금지급장소가 되므로 본조 (2)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의 영업소가 변경되어 발생한 대금지급에 관한 추가비용은 마땅히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sup>9)</sup>

#### 1) 대금지급장소의 결정

소위 의무이행지에 관할권이 있다는 법률체계를 보유한 국가에서 본조 (1)은 매우 중요한 법적 기능을 갖는다. 이를테면 EU 연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곧 EU 회원국에게 구속

9) Lookofsky, Joseph, *Understanding the CISG*, Wolters Kluwer, 2008, pp.95-96.

력이 있으며 민사·상사에 관한 관할권과 판결집행의 권한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이른바 ‘브뤼셀협약’(Brussels Convention, 1968)에서는 원고로 하여금 의무이행지의 법원에서 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5.1조).<sup>10)</sup>

본조는 유럽자유무역연맹(EFTA) 국가에 구속력을 가지는 ‘루가노협약’(Lugano Convention : 1988)에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브뤼셀협약과 루가노협약에 따라 CISG에서도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소가 소재한 지역에 관할권을 갖고 있는 법원에서 계약위반의 당사자로서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2) 매도인 영업소의 변경

본조 (2)에서는 계약체결 이후에 매도인의 영업소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금지급에 부수하는 비용은 응당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새로운 영업소에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매도인은 반드시 상당한 기간 내에 영업지의 변경사항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0조(자신의 귀책사유와 상대방의 불이행)에 의할 경우 영업소의 주소지 변경에 관한 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 2. 대금지급의 시기

제58조는 그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본조는 물품대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제78조(연체된 금액의 이자)에 언급된 이자의 누적의 시기 또한 다루고 있다.

### 1) 물품대금지급의 동시이행

본조 (1)에서는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위 ‘동시이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이 물품 또는 물품의 처분권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10) ‘Brussels Convention’, Art. 5.1(or ‘Lugano Convention’, Art. 5) : “A person domiciled in a Contracting State may,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be sued: (1) in matters relating to a contract, in the courts for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n question; (2) in matters relating to maintenance, in the courts for the place where the maintenance creditor is domiciled or habitually resident or, if the matter is ancillary to proceedings concerning the status of a person, in the court which, according to its own law, has jurisdiction to entertain those proceedings, unless that jurisdiction is based solely on the nationality of one of the parties.”

임의처분하에 두었을 때, 매수인은 당해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 (1) 제2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만약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물품 또는 물품의 처분권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물품 또는 물품의 처분권을 지배하는 서류를 유보할 권리를 보유한다.

본조 (1)의 원칙은 역으로의 적용이 가능하다. 곧 달리 합의하고 있지 않는 한 물품 또는 물품의 처분권을 지배하는 서류가 이전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본조 (3)은 매수인에게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 ‘보완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인도 또는 지급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계약의 내용은 이러한 권리와 다름없이 일치하여야 한다.<sup>11)</sup>

한편 ‘계약의 내용’, ‘국제상관습’, ‘당사자 간에 확립되어 있는 관례’ 등에는 공히 물품이전과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위 ‘동시이행의 원칙’을 감퇴시킬 수 있다. 본조 (1)은 매수인이 별단의 특정한 기간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분할지급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 물품 또는 서류의 이전 장소는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진다. 계약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 제31조(물품 인도장소)의 적용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본조 (1)은 물품의 인도와 물품의 처분권을 지배하는 서류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양자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문제시 될 수 있는 사안은, ‘물품의 처분권을 지배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예컨대 ‘원산지증명서’, ‘품질증명서’, ‘통관서류’ 등은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처분권을 지배하는 서류’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서류가 인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2) 운송계약을 수반하는 매매계약

본조 (2)는 제3자가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의 매매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에 의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 또는 물품의 처분권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본조 (2)는 매수인이 지급한 전도금(advanced payment)을 조건으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매도인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달리 합의가 없는 경우 운송인이 물품 또는 물품의 처분권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전에 매수인은 약정된 물품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sup>12)</sup>

11) Huber, Peter · Mullis, Alastair, *The CISG*, European Law Publishers, 2007, p.307.

### 3) 매수인의 물품에 관한 사전 검사권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미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물품검사의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매수인은 당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렇지만 이 같은 사전검사권은 계약의 내용 또는 물품의 검사와 양립할 수 없는 인도 또는 지급절차를 통해 배제할 수 있다. 예컨대, ‘서류인도지급조건’(payment against handing over of documents), ‘인도지급조건’(payment against handing over of the delivery slip)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3. 판결례

### 1) EuGVVO에 의한 재판관할의 판결 - ①

#### (1) 논점과 사실관계

본 사건은 물품대금의 지급지 판정에 있어, 소위 신유럽규범에 근거한 경우 당해 이행지는 실제로 물품을 인도한 장소여야만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sup>12)</sup> 원고(매도인, 오스트리아)는 피고(매수인, 독일)에게 바이올린을 매도하였다.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지불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스트리아에서 제기하였다.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바이올린을 인수받아 자신이 전매하고 물품대금은 전매의 상황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이 물품대금 지급불능에 처하자 매도인은 CISG 제57조와 관련된, 이른바 EuGVVO(‘재판관할에 관한 민사 및 상사 소송사건 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EU 법령’,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제5조<sup>14)</sup>에 따라, 본 오스트리아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12) Honnold, John, 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 1999, pp.363-369.

13) 『Rechtbank van Koophandel, Hasselt』(Belgium), 『A.R.: 04/79』, 2004.02.25. 이와 유사한 판례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Oestre Landsret (Eastern High Court)』(Denmark), 『B-1145-00』, 2000.12.04., 『Cour de Cassation』(France), 『1101 F-P』, 2001.06.26., 『Oberlandesgericht Düsseldorf』(Germany), 『I-23 U 70/03』, 2004.01.30., 『Corte Suprema di Cassazione, Sez.Un.』(Italy), 『7503』, 2004.04.20., 『Gerechthof's Amsterdam』(Netherlands), 『243/1997』, 1997.11.20., 『Audiencia Provincial de Navarra』(Spain), 『182/1999』, 1999.07.23., 『Schweizerisches Bundesgericht』(Switzerland), 『4C.100/2000/md』, 2000.07.11.

14) EuGVVO, Article 5 : “A person domiciled in a Member State may, in another Member State, be sued: 1. (a) in matters relating to a contract, in the courts for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n question; (b) for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and unless otherwise agreed,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n question shall be: - in the case of the sale of goods, the place in a Member State where, under the contract, the goods were delivered or should have been delivered, - in the case of the provision of services, the place in a Member State where, under the contract, the services were provided or should have been provided, (c) if subparagraph (b) does not apply then subparagraph (a) applies; 2. in matters relating to maintenance, in the courts for the place where the maintenance creditor is domiciled or habitually resident or, if the matter is ancillary to proceedings concerning the status of a person, in the court which, according to its own law, has jurisdiction to entertain those proceedings, unless that jurisdiction is based solely on the nationality of one of the parties; 3. in matters relating to tort, delict or quasi-delict, in the courts for the place where the harmful event occurred

이 같은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는 오스트리아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EuGVVO 제2조15)에 준하는 외국인 이 아니면 안 되고, 또한 EuGVVO 제5조 (1), (b)에 따른 이행지는 매도인의 진술에 따라 물품을 인도한 독일이라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인정하고, EuGVVO 제5조 (1), (b)에 따라 이미 인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에 적합한 형태라면, 계약이행지는 실제로 물품을 인도한 곳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였다. 재판관할에 관해서는, 곧 CISG와 EuGVVO 중 어느 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CISG 제57조는 단순히 지급의무에 관해서만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 반하여 EuGVVO 제5조 (1), (b)는 이점에 입각한 내용은 아니고 단지 지급청구에 대해 EuGVVO 제5조 (1), (b)에 상관없이 이행장소에 관한 명확한 계약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만을 논의할 수 있음에 따라, 매도인은 이러한 주장은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2) 판결요지

본건 법원은 매도인의 상고는 기각하고 매도인이 청구한 소송비용을 매수인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상고심에서는 매도인의 상고를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곧 매도인으로서 EuVVO 제5조와 CISG 제57조 (1)과의 관련성에 기하여 매도인의 지급요구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의 최초 판결임으로 이는 그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특별상고를 인정했다는 주문이었다.

매도인은 CISG 제57조 (1)에 비추어 특별히 모순된 합의점이 없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매도인은 오스트리아의 법정에서 물품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도 무방하며 이 경우 CISG는 유일한 절차법으로서 통일된 실체법의 지위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점에 대해 법원은 CISG에 입각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까지를 포함하여 계약

---

or may occur; 4. as regards a civil claim for damages or restitution which is based on an act giving rise to criminal proceedings, in the court seised of those proceedings, to the extent that court has jurisdiction under its own law to entertain civil proceedings; 5. as regards a dispute arising out of the operations of a branch, agency or other establishment, in the courts for the place in which the branch, agency or other establishment is situated; 6. as settlor, trustee or beneficiary of a trust created by the operation of a statute, or by a written instrument, or created orally and evidenced in writing, in the courts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trust is domiciled; 7. as regards a dispute concerning the payment of remuneration claimed in respect of the salvage of a cargo or freight, in the court under the authority of which the cargo or freight in question: (a) has been arrested to secure such payment, or (b) could have been so arrested, but bail or other security has been given; provided that this provision shall apply only if it is claimed that the defendant has an interest in the cargo or freight or had such an interest at the time of salvage.”

15) EuGVVO, Article 2 : “1. Subject to this Regulation, persons domiciled in a Member State shall, whatever their nationality, be sued in the courts of that Member State. 2. Person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y are domiciled shall be governed by the rules of jurisdiction applicable to nationals of that State.”

의 특수한 사항이 이행되어야만 하고 또는 이행되었어야 할 장소야 말로 절차법상 계약의무의 이행장소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로 계약이행이 실제로 이루어진 장소는 법이론상의 선택에 있어서 결정기준이며 계약의 이행장소는 법정기준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비추어 당사자 간에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은 특히 중요한 일이었다. 곧 계약에 따라 매수인 영업소 소재지에서 물품이 인도된 경우에는 행위지에 기한 재판관할이 발생하며 이는 CISG에 의한 해결에 있어서도 그 처지는 동일하였다.

그러나 EuGVVO 제5조 (1), (b)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의 이행 의무 전반에 걸쳐 물품인도장소가 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57조 (1)은 물품매매대금의 청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상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3) 평가

제55조 물품매매거래 금액의 사정과 함께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주안점은 본조상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 의무의 이행지와 재판관할을 둘러싼, 소위 EuGVVO에 구속되는 판결례와 CISG의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그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판결례가 병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57조는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 의무이행지를 매도인 소재지 또는 서면인도지 등으로 보고 있어 외견상 간단하게 보이는 규정이지만 본 규정은 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당해 판결의 결과에 끼치는 영향도 크고 또한 실제로 재판에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 다투는 일이 빈번한 상황이다. 또한 본조는 매도인 소재지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증가분은 매수인의 부담이 되지만 달리 채권양도처의 지정에 의한 경우는 배제된다.

2000년 12월 이전에 유럽에서는 재판관할에 있어 CISG 체결국 내지 EU 회원국인 경우 본조에 입각하여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 의무를 둘러싼 재판관할은 매도인의 소재지로 한다는 판결이 매우 많았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의 폐단 때문에 2000년 12월 EuGVVO에 따라 역내 CISG 체결국 간 재판의 경우에서도 그 수정이 가해졌다. 곧 최대의 변경사항은 물품대금지급 의무를 둘러싼 재판관할지가 물품의 인도지 기준으로 변경되어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CISG는 국제협약으로서 국내법에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할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나 EU에서는 당사자가 별도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국이라면 당해 국가는 EU의 구성국인 까닭에 EU 관련 조약에 따라 동일국내에서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효

과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의무를 가맹국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EU 법령이 균등하게 적용되어 EU 법령이 CISG에 우선하여 국내법과 같이 적용받게 되는 결과로 귀착되게 된다.

또한 EU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CISG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CISG를 적용하게 된다는 판례도 보인다. 그러나 당사자의 합의관할이 계약내용에 유효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합의관할지에서의 국제재판도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 이 경우 물품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금 지급과 과다지급금의 이행지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준거법에 따라 정해진 소재지가 된다는 해석이 통설이다. 한편 본조는 제58조(대금지급시기)와 같이 병행해서 취급되는 경우도 다수임을 참고한다.

본 판결은 2000년 12월 이후 EuGVVO를 적용하여 재판관할을 결정한 오스트리아 최고 법원의 판결이다. 요컨대 본건 판결은 CISG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물품대금지급 의무이행지, 매도인 국가, 재판관할지’라는 공식은 완전히 배제되고 CISG에 입각해서 판단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계약의 특징적 사항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졌어야 할 장소가 절차법상 시각에서 계약의무의 이행장소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일괄하면 본 판결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소위 EuGVVO의 위상을 돋보인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 2) EuGVVO에 의한 재판관할의 판결 - ②

### (1) 논점과 사실관계

본 사건은 독일을 국제재판관할로 한 상관습이 존재하여, 이것을 계약합의의 일부라고 취급하는 경우 물품대금지급 의무이행지의 판정에 있어 EuGVVO에 입각하여 독일 국제재판관할을 확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사례이다.<sup>16)</sup>

원고(매도인, 독일)는 스페인 국내에 국한시킨 매매계약상의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피고(매수인, 스페인)를 제소하였다. 이 경우 사실관계의 상세는 비공개이고 본건은 독일 쾰른 법원에서 원고청구를 국제재판관할권 결여를 이유로 기각하자 피고가 항소한 사건임을 참고한다.

### (2) 판결요지

상급심에서는 제1심의 판결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독일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본 법원은 EuGVVO 제60조 (1), 제66조 (1), 제76조의 각조에 의해<sup>17)</sup> 당사자의 본건 계약체결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16) 『Oberlandesgericht Köln』(Germany), 『Unknown』, 2005.12.21.

본건에서 법원은 EuGVVO 제23조<sup>18)</sup>에 입각한 당사자 합의에 의한 독일 법정의 국제재판관할권은 당사자의 유효한 합의가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점에 관해 원고의 반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건 판결에서는 이점을 다루지 않았다. 또한 독일을 상관습에 입각하여 합의적 국제재판관할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러한 상관습의 존재여부를 매도인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나아가 EuGVVO 제5조 (1), (b)에 의할 경우에도 독일의 국제재판관할은 확정할 수 없다고 실시하였다.

법원은 그 취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EuGVVO 제5조 (1), (b)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계약의무가 이행되고 또는 이행되어야 할 다른 회원국에서 피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지역은 물품이 인도된 장소를 의미한다. 본건 계약에서는 그 장소가 독일이 아닌 스페인에 위치한 영업소라고 특정하고 있는 바, 이에 당해 장소가 인도장소가 된다. 본 장소는 매수인이 물리적인 관리통제권을 갖고 있는 장소임과 동시에 배송처이기도 하다.

또한 매도인은 CISG 제57조 (1)에 입각하여 독일 재판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CISG를 적용하는 경우 합의된 지급의무이행지가 매도인의 영업소 소재지이어야만 하므로 이 주장은

17) EuGVVO, Article 60 : “1.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a company or other legal person or association of natural or legal persons is domiciled at the place where it has its: (a) statutory seat, or (b) central administration, or (c) principal place of business. 2. For the purposes of the United Kingdom and Ireland “statutory seat” means the registered office or, where there is no such office anywhere, the place of incorporation or, where there is no such place anywhere, the place under the law of which the formation took place. 3.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trust is domiciled in the Member State whose courts are seised of the matter, the court shall apply its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66 : “1. This Regulation shall apply only to legal proceedings instituted and to documents formally drawn up or registered as authentic instruments after the entry into force thereof. 2. However, if the proceedings in the Member State of origin were institut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Regulation, judgments given after that date shall be recognised and enforced in accordance with Chapter III, (a) if the proceedings in the Member State of origin were institut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Brussels or the Lugano Convention both in the Member State of origin and in the Member State addressed; (b) in all other cases, if jurisdiction was founded upon rules which accorded with those provided for either in Chapter II or in a convention concluded between the Member State of origin and the Member State addressed which was in force when the proceedings were instituted.”; Article 76 :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1 March 2002. This Regulation is binding in its entirety and directly applicable in the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18) EuGVVO, Article 23 : “1. If the parties, one or more of whom is domiciled in a Member State, have agreed that a court or the courts of a Member State are to have jurisdiction to settle any disputes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a particular legal relationship, that court or those courts shall have jurisdiction. Such jurisdiction shall be exclusive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Such an agreement conferring jurisdiction shall be either: (a) in writing or evidenced in writing; or (b) in a form which accords with practices which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or (c) in international trade or commerce, in a form which accords with a usage of which the parties are or ought to have been aware and which in such trade or commerce is widely known to, and regularly observed by, parties to contracts of the type involved in the particular trade or commerce concerned. 2. Any communication by electronic means which provides a durable record of the agreement shall be equivalent to ‘writing’. 3. Where such an agreement is concluded by parties, none of whom is domiciled in a Member State, the courts of other Member States shall have no jurisdiction over their disputes unless the court or courts chosen have declined jurisdiction. 4. The court or courts of a Member State on which a trust instrument has conferred jurisdiction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in any proceedings brought against a settlor, trustee or beneficiary, if relations between these persons or their rights or obligations under the trust are involved. 5. Agreements or provisions of a trust instrument conferring jurisdiction shall have no legal force if they are contrary to Articles 13, 17 or 21, or if the courts whose jurisdiction they purport to exclude have exclusive jurisdiction by virtue of Article 22.”

이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합의된 계약의무이행지가 당해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과 상이할 때에는 단순히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실제의 의무이행지도 합의된 대로 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이다.

본건에서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배제가 없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CISG 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적인 별단의 법규범의 존재도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실제로 행해진 계약의무 이행의 실제행위도 이러한 법규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계약체결이 EuGVVO의 시행시기보다 빠르다고 해서 EuGVVO 제5조를 적용할 수 없고 이에 CISG 제57조 (1)에 따라야 한다는 매도인의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이를테면 합의가 단순히 이행장소를 정하기 위한 법적 인도장소의 합의라면 EuGVVO 제23조 규정의 형식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며 달리 추상적인 합의는 형식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또한 매도인이 CISG를 포함한 독일법을 선택한다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자유에 있다는 주장 역시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EuGVVO 제5조 (1), (b)에 비추어 실제의 인도장소는 독일이 아닌 계약이행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물품의 보관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인 점 등으로 미루어 인도장소는 물품이 설치되는 스페인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3) 평가

본 판결도 앞선 판정례와 마찬가지로 2000년 12월 이후 EuGVVO를 적용하여 재판관할을 결정한 판결이다. 본건 판결로부터의 유의점은 합의관할이 계약상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 EuGVVO 제23조에 의해 독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3) EuGVVO에 의하지 않은 재판관할의 판결 - ③

### (1) 논점과 사실관계

본 사건은 EuGVVO가 적용되지 않는 원고(매도인, 스위스)가 피고(매수인, 독일)를 제소할 경우 스위스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sup>19)</sup> 매도인은 터널건설용 기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비스업자로서 광산개발용 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독일 매수인에게 스위스 국유철도의 중고 레일과 레일 결합용 조인트를 계약의 목적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본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이 수송비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관세 및 이와 관련한 그 밖의 부대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후 매도인에 의해 선정된 운송인이 계약의 내용

19) 『Handelsgericht des Kantons Aargau』(Switzerland), 『Unknown』, 2007.06.19.

대로 두 차례에 나누어 이들 물품을 독일에 반입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했으나 운송인이 매수인에게 추가 청구한 운송비 관련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본건과는 별도로 매수인은 추가로 레일과 조인트 등을 발주하였다. 그런데 이전의 비용이 미지급된 상태였으므로 매도인은 이들 추가 발주분을 납품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후 매도인의 지급독촉에 대응한 매수인은 당해 지급을 미루고 있다가 추후 물품대금의 지급연기를 제의하였으나 매도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물품대금 및 이에 상당한 지체상금과 소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매수인을 스위스 법원에 제소하였다.

## (2) 판결요지

법원은 매도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매수인에게 물품대금, 지체상금 및 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법원은 CISG의 적용과 재판관할에 관해서는 국제조약이 우선되지 않는 한, 저촉법에 관하여 스위스 국내법을 적용하여 스위스가 계약국으로 있는 ‘루가노 조약’을 본건에 적용하였다.

본 사건에서 특정의 재판관할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당해 법적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재판관할이 존재하는 국가에서의 재판이 유효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원은 본건 계약의무의 이행지와 관련하여 독일과 스위스 모두 CISG 계약국이므로 이에 저촉법으로서 CISG를 적용하였다.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권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또한 매수인이 인도를 행하는 장소에서 그 지급을 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곧 매수인 지급의무의 이행장소는 매도인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매수인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반론을 기한 내에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매도인의 물품대금청구는 매수인의 청약과 매도인의 승낙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는 정당하며 또한 CISG는 본건 계약이 국내법에 입각해서 무효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음에 따라 매도인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본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독일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매도인은 세금 또는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의무가 있었지만 매수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매도인은 제31조(물품인도장소)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매수인은 제53조(매수인 의무의 총괄)에 입각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매수인은 물품대금 지급연기를 요청하였으므로 매도인에게 당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매도인은 자신이 운송인에게 매수인을 대신하여 기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의 지급을 매수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 매도인의 이 같은 주장은 인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CISG는 주된 권리·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무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건 계약에서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당연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매도인은 제74조(손해액 산정의 일반원칙)과 제61조(매도인 구제권의 총괄) (1), (b)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3) 평가

본 사건은 EuGVVO가 적용되지 않는 스위스, 곧 CISG의 계약국이지만 EU의 회원국에 영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매도인이 CISG 제57조의 적용에 따라 스위스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해 승소한 사건이다. EU 비회원국으로서 당연한 판결례이지만 EuGVVO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CISG의 물품대금지급 의무이행지는 매도인 국가가 되며 동시에 재판관할지라는 등 가공식이 그대로 적용된 판결례로 취급할 수 있다.

## 4. 대금지급의무와 지급요구의 불필요

### 1) 물품대금지급 이전에 절차의 면제

제59조에 의거 매수인은 그 어떠한 통지 또는 매도인에 의한 그 어떠한 절차를 준수할 필요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금지급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시기부터 제78조(연체된 금액의 이자)가 적용된다.

### 2) 그 밖의 화폐로 지불하기 전에 절차의 면제

본조는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든 화폐와 관련된 그 어떠한 클레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제7조(계약의 해석원칙) (2)의 범위 내를 그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클레임은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지급’, ‘보상금의 지급’, ‘물품관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제85조(매도인의 물품보존의무), 제86조(매수인의 물품보존의무)] 등이 해당한다고 본다.

## V. 요약 및 결론

### 1. 규정해석에 관한 법적 기준

제53조(매수인 의무의 총괄)는 CISG 제3편(물품의 매매) 제3장(매수인의 의무)의 개요임과 동시에 매수인의 주된 의무를 일괄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CISG에서는 물품매매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까닭에, 특별히 본조는 제30조(매도인 의무의 총괄)와 연계하여 다루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 경우 본조와 제6조(계약에 의한 적용배제 또는 변경)를 병합할 경우 만약 계약상 CISG에 규정하고 있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하게 된다.

제54조(대금지급을 위한 조치)는 계약이나 또는 적용법규에 따라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준비조치를 다루고 있는 규정으로서 본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제61조(매도인 구제권의 총괄)에 따라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제71조(이행정지)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준비 또는 계약이행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5조(대금불확정 계약)는 적용 전에 반드시 양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곧 계약당사자가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본조는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당해 계약에 개입하여 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에는 제7조(협약의 해석원칙)의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원칙 내지 국제사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6조(순중량에 의한 대금의 결정)는 당사자가 물품중량의 기준을 합의해 두고 있지 않다면 포장중량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으로 물품대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당사자 의사나 관행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해석원칙이다.

제57조(대금지급장소)에 의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물품대금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지급되어야 하고 당사자가 물품의 인도 또는 서류의 교부 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되는 당해 장소에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영업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이로부터 발생한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추가비용은 마땅히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대금지급시기)는 그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이 경우 본조는 제78조(연체금액의 이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의 누적의 시기 또한 다루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제59조(대금지급의무와 지급요구의 불필요)에 따라 매수인은 그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모든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해 시점 이후로 연체된 금액의 이자가 적용된다. 또한 본조는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든 화폐와 관련된 그 어떠한 클레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원칙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계약의 해석원칙에 관한 일반원칙이 그 조건이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당해 클레임에는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지급, 보상금의 지급, 물품 관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 등이 해당될 수 있다.

## 2. 실무적용상 유의점과 시사점

첫째 제53조에 기하여 매수인은 특단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이를테면 물품대금지급의 담보를 제공하는 의무, 물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함에 있어 원료를 제공하는 의무, 물품의 형태·크기 또는 그 밖의 특징을 제공하는 의무 등이다.

둘째 제54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매수인의 준비조치는 예컨대 신용장 개설, 담보증명, 은행지급보증, 어음의 인수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 같은 준비조치 내지 그 절차의 불이행은 그 발생이 가능한 이행기 전의 위반에 관한 일련의 저촉적 요소로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셋째 대금불확정계약과 관련하여 부각할 수 있는 시사점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물품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를 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그 어떠한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계약체결 시에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매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징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원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넷째 물품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조기인도 및 수량초과인도의 요건이 결부된 경우 제79조(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 의한 특단의 장애나 사정변경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제53조 및 제54조에 기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당해 요건은 제61조, 제74조(손해액 산정의 일반원칙) 내지 제75조(대체거래와 손해액)에 병합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매수인의 주장은 여하히 배척될 것이다. 판결례에 비추어 통상 제53조와 제54조 내지 제59조는 병합되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섯째 물품매매거래 금액의 사정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EuGVVO(재판관할에 관한 민사 및 상사 소송사건 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EU 법령)에 구속되는 판결례와 CISG의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그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판결례가 병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CISG 체결국 내지 EU 회원국인 경우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 의무를 둘러싼 재판관할은 매도인의 소재지로 한다는 판결이 매우 많았으나 2001년 이후 EuGVVO에 따라 역내 CISG 체결국 간 재판의 경우에서도 그 수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핵심은 물품대금지급 의무를 둘러싼 재판관할지가 물품의 인도지 기준으로 변경되어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CISG는 국제협약으로서 국내법에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할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나 EU에서는 당사자가 별도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국이라면 당해 국가는 EU의 구성국인 까닭에 EU 관련 조약에 따라 동일국내에서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의무를 가맹국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EU 법령이 균등하게 적용되어 EU 법령이 CISG에 우선하여 국내법과 같이 적용받게 되는 결과로 귀착되게 됨은 실무적용상 EU 역내에 진출한 국내기업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김용일 외,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이행지체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 pp.385-404.
- 심종석, “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pp.231-251.
- 오석웅,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과 UNIDROIT 원칙 2004의 비교 연구”, 「법학연구」, 제25권, 한국법학회, pp.269-296.
- 허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무역학회지」, 제35권 1호, 한국무역학회, 2010, pp.361-386.
- 하강현, “국제물품매매에서 대금지급장소조항의 적용사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4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pp.105-130.
- 新堀 聰, 「ウイーン賣買條約と貿易契約」, 同文館出版, 2009.
- Honnold, John, 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 1999.
- Huber, Peter · Mullis, Alastair, *The CISG*, European Law Publishers, 2007.
- Kelong, N. William, “Problems Relating to the Place of Performance for Payment of Damages and the Admissibility of Set-Off Claims under Article 74 CISG,” *Surrey Law Working*

- Papers*, Surrey Law School Publishing, 2013.
- Lookofsky, Joseph, *Understanding the CISG*, Wolters Kluwer, 2008.
- Schlechtriem, Pet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 Oxford Univ. Press, 1998.
- Schwenzer, Ingeborg,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3rd ed., Oxford Univ. Press, 2010.
- Schwenzer, Ingeborg · Fountoulakis, Christiana, *International Sales Law*, Cavendish Publishing, 2007.
- 「Bezirksgericht St. Gallen」(Switzerland), 『3PZ 97/18』, 1997.08.03.
- 「Handelsgericht des Kantons Aargau」(Switzerland), 『Unknown』, 2007.06.19.
- 「Oberlandesgericht Köln」(Germany), 『Unknown』, 2000.
- 「Oberlandesgericht Köln」(Germany), 『Unknown』, 2005.12.21.
- 「Rechtbank van Koophandel, Hasselt」(Belgium), 『A.R: 04/79』, 2004.02.25.

## ABSTRACT

#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for the Goods under CISG

Chong-Seok, Shim\*

Section I of Chapter III ('Obligations of the Buyer') in Part III ('Sale of Goods') of the CISG consists of six articles addressing one of the fundamental buyer obligations described in article 53 of the CISG: the obligation to pay the price. Although the amount of the price that the buyer must pay is usually specified in the contract, two articles in Section I contain rules governing the amount of the price in particular special circumstances: article 55 specifies a price when one is not fixed or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and article 56 specifies the way to determine the price when it is 'fixed according to the weight of the goods'. The remaining four provisions in Section I relate to the manner of paying the price: they include rules on the buyer's obligation to take steps preparatory to and to comply with formalities required for paying the price (article 54); provisions on the place of payment (article 57) and the time for payment (article 58); and an article dispensing with the need for a formal demand for payment by the seller (article 59). Especially article 53 states the principal obligations of the buyer, and serves as an introduction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III. As the CISG does not define what constitutes a 'sale of goods', article 53, in combination with article 30, also sheds light on this matter. The principal obligations of the buyer are to pay the price for and take delivery of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this CISG'. From this phrase, as well as from article six of the CISG, it follows that, where the contract provides for the performance to take place in a manner that differs from that set forth in the CISG, the parties' agreement prevails.

**Key Words** : CISG, Buyer's Obligations, Paying the Price, Weight of the Goods, Place of Payment, Time for Payment.

---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p't of Foreign Trade, Daegu University.